

2월4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 번호	대지위치	대지 면적	건축 면적	연면 적	주용도	층수	용도 지역	심의일자	구분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1965 00000P 000612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642	94.3 4	176. 2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	201965 00000P 000613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803	159. 36	274. 05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	201965 00000P 000614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1,05 7	159. 36	267. 75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	201965 00000P 000617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897	159. 36	274. 05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	201965 00000P 000619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600	94.3 4	176. 2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	201965 00000P 000622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동일리 2691- 5	480	94.3 4	176. 2	제1종근린 생활시설	2/0	보전녹지 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연번	접수번호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심의일자	구분	심의결과	의결내용
7	20196500000P000624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91-5	480	94.34	176.2	제1종근린생활시설	2/0	보전녹지지역	2019.2.28.		부결	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8	20196500000P000721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섹달동 2558	4,673	858	1,556.72	문화및집회시설	2/1	자연녹지지역	2019.2.28.		조건부동의	주차계획 재검토(막힌주차가 아닌 순환주차) 바랍니다.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, 건축허가(신고) 신청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9	20196500000P000729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48	11,841	871.11	908.67	문화및집회시설	1/1	자연녹지지역	2019.2.28.	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, 건축허가(신고) 신청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10	20196500000P000814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-3	32,454	5,388.68	24,412.7068	숙박시설	9/2	자연녹지지역	2019.2.28.		재심의	기존 건축물과 조화로운 마감재 및 색상 재검토 바랍니다.